

#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321
----------	-----

2020. 10. 19.  
복지도시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 10. 5. 강남구청장(도로관리과)

나. 상정의결

- 제289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2020. 10. 19.)  
“ 수정가결 ”

## 2. 제안이유( 제안설명 : 안전교통국장 김만호 )

-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 범위, 방법, 시기, 등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주민과 함께하는 제설문화 정착을 유도하고 겨울철 강설로 인한 주민불편사항을 최소화 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목적, 정의 등(안 제1조 ~ 제2조)
- 나. 제설·제빙의 책임 순위, 범위 등(안 제3조 ~ 제4조)
- 다. 제설·제빙의 시기, 방법 등(안 제5조 ~ 제6조)
- 라. 제설·제빙 작업의 안전·도구 등의 관리(안 제7조 ~ 제9조)

## 4. 관련근거 및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1)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책임)
- (2)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8(지붕 제설·제빙 대상 시설물의 범위)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20. 9. 4. ~ 2020. 9. 24.): 의견제출 없음
-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3)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 (4)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선사항 없음

## 5.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이상원 )

- 본 제정안은 「자연재해대책법」 1) 규정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임
- 안 제2조(정의)제1항제1호의 “보도”와 제3호의 “보행자전용도로”는 각각 「도로교통법」 2)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보이는 바, 제1호의 괄호() 중 ‘행정자치부령’은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3)’으로 수정하여 근거 법령을

1) 「자연재해대책법」제27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책임) ①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자(이하 "건축물관리자"라 한다)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步道),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지붕으로 한정한다)에 대한 제설·제빙 작업을 하여야 한다.

②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 제설·제빙 책임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2)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보도"(步道)란 연석선,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31. "보행자전용도로"란 보행자만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3)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보행보조용 의자차의 기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 및 제17호가목5)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의료기기의 규격에 따른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및 의료용 스쿠터의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명확하게 하는 검토가 필요해 보임

같은 항 제6호 “제설·제빙”은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등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작업으로 하였으며, 시설물의 지붕의 적설하중 증가에 따른 붕괴를 방지하여 인명 보호 및 안전 도모를 위한 작업으로 규정하였음

제2항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4)에 따른 시설물(제1항제6호 - 시설물 지붕과 관련하여)을 정의한 사항으로 각 호에 대한 내용 설명이 요구됨

- 안 제3조(제설·제빙 책임 순위)에서는 건축물관리자의 순위를 소유자가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점유자), 관리자 순으로 하고, 소유자가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 또는 관리자, 소유자 순으로 규정한 바 내용 설명이 요구되며, 본문부의 ‘~~ 건축물 관리자의 순위는 ~~’ 조 제명에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책임 순위’로 규정하는 검토도 필요해 보임

또한, 본문부의 단서 규정에는 합의가 된 경우에는 그 순위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일반적으로 소유자가 합의 결정상 우위에 있다고 사료되는 바, 설명이 요구됨

아울러, 조례에 책임 순위가 명시됨에 따라 건축물 관리자가 책임을 다하지 않아 발생하는 인적·물적 사고에 대해 책임소재 문제, 지방자치단체와 건축물 관리자, 일반 시민(사고 당사자 등) 등과의 다툼 등에 대해 조례 제정 후 실행과정에서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설명이 필요함

---

4)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22조의8(지붕 제설·제빙 대상 시설물의 범위) 법 제2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시설물을 말한다.

1.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8호에 따른 특수구조 건축물에 해당하는 시설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구조로 된 시설물일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일 것
  - 가. 기본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특정 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시설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에 따른 공장으로서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
  - 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

○ 안 제4조(제설·제빙 범위)에서는 건축물관리자가 제설·제빙을 하여야 하는 범위를 각 호로 구분한 바, 상세(보도 현황,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 현황,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시설물 현황 등) 설명이 요구됨

또한, 일부 자치구<sup>5)</sup>에서는 책임범위를 별표(예시도 또는 평면도)로 규정하기도 하였으나 서울시를 비롯한 국민안전처 표준조례안<sup>6)</sup>에는 별지에 관한 규정이 없는 바, 비교 설명이 요구됨. 아울러, 이와 관련한 보충자료<sup>7)</sup>는 아래와 같으니 연계 설명도 요구됨

	
<p>〈보도에 접한 건물〉 - 해당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 보도 전체</p>	<p>〈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 - 주거용 건축물: 주 출입구 넓이의 1m 구간 까지</p>
	
<p>〈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 - 비주거용 건축물: 건축물 전체 구간 1m 구간 까지</p>	<p>〈시설물의 지붕 - 25cm 이상적설〉 - 공업화박판강구조(PEB) 또는 아치 판넬 구조의 지붕 1) 공장(연면적 500㎡ 이상) 2) 특정관리대상으로 지정된시설 3) 시특법상 1, 2종 공동주택</p>

5) 강서구, 금천구, 마포구, 서대문구, 용산구 등

6) 국민안전처(자연재난대응과 - 159(2017. 01. 11))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관련 조례 제·개정 촉구(표준안 2016. 2. 4 통보)

7) 출처 : 집행부 보충자료

- 안 제5조(제설·제빙 시기)에서는 제설·제빙의 시기를 적설량 10cm미만, 10cm이상으로 규정하고, 시설물 지붕의 경우에는 적설량 25cm 이상 등으로 구분하여 각 호로 규정한 바, 각 호 규정에 대한 상세 설명이 요구됨.
- 안 제6조(제설·제빙 방법)부터 안 제8조(제설·제빙 작업의 중지)까지는 제설·제빙 후 옮겨야 하는 장소, 안전유의 및 안전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안 제9조(제설·제빙 도구 등의 관리)제1항에는 건축물관리자가 제설·제빙에 필요한 도구를 비치 관리하도록 하였으며, 제2항에는 구청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는 바, 지원에 대한 구체적(지원기준, 지원방법, 소요예산 등) 설명이 요구됨
- 이에, 본 조례 제정안은 건축물관리자에게 제설·제빙의 책임을 부여하면서 상위법의 위임이 없어 별칙 규정을 두지 못하는 한계로 인해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기대할 수 밖에 없어 실효성 확보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건축물관리자가 제설·제빙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을 경우 사고(인적·물적) 발생시 사고당사자, 건축물관리자, 자치단체 간의 다툼에 대한 문제 해결도 쉽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그러나, 「자연재해대책법」<sup>8)</sup> 규정, 국민안전처의 조례 제정 촉구, 다른 자치단체의 조례 제정현황<sup>9)</sup>, 내 집 앞 눈 치우기의 정착 등을 고려하면 제정의 당위성과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됨

- 따라서, 본 조례 제정은 내 집 앞 눈치우기의 관심을 높여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는데 의의는 있다고 사료되나, 조례 제정 후 시행과정에서 조례의 실효성 확보 방안 및 홍보

8) 「자연재해대책법」제27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책임) ①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자(이하 "건축물관리자"라 한다)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歩道),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지붕으로 한정한다)에 대한 제설·제빙 작업을 하여야 한다.

②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 제설·제빙 책임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9) 2020 6월 현재 미제정 자치구 : 강남구, 종로구, 중구, 광진구, 중랑구, 동작구

대책 등을 마련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6. 질의 및 답변 요지

- 질 의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2조의8에서 정하는 시설물에 해당되는 건물이 강남구 있는지
- 답 변 : 현재 강남구에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2조의8에서 정하는 시설물에 해당되는 건물은 없음
- 질 의 : 제설자재 저장창고 등 강남구에도 판넬로 지어진 조립식 건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2조의8에서 정하는 시설물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지
- 답 변 : 본 조례안 제2조에 정의되어 있는 아치판넬 시공 시설물은 중앙에 기둥이 없이 아치로만 되어있는 구조로 되어있는 시설물을 말하는 것으로 2014년도에 발생한 경주 마리나 리조트 붕괴사고 이후에 행정자치부령으로 신설된 사항이며, 강남구에 있는 조립식 건물들은 아치판넬 시공 시설물에 해당되지 않음
- 질 의 : 본 조례 제정이후에 건축물관리자가 제설·제빙을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경우 책임지는 부분은 없는지
- 답 변 : 건축물관리자가 제설·제빙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더라도 강제조항이 아니어서 책임지는 부분은 없음

## 7. 토론 요지

- 토론과정 중, 김진홍 의원으로부터 신설 조문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근거 법령을 일관성 있게 명시하고자 일부 조문을 수정하자는 수정동의안이 제출됨

8. 심사 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10. 기타 사항 : “없음”

붙임 1. 서울특별시 강남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1부.

2. 서울특별시 강남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 1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 수 정 안

관련의안번호
--------

제321호
-------

발의일자 : 2020. 10. 19.

제안자 : 복지도시위원장

## 1. 수정이유

신설 조문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근거법령을 일관성 있게 명시하고자  
수정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 근거법령 인용을 명확히 함(안 제2조제1항제1호)
- 조 제명 취지에 맞게 용어를 수정함(안 제3조)



서울특별시 강남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 수 정 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제1항제1호 중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으로 한다.

안 제3조 본문 중 “순위”를 “책임 순위”로 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p>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보도”라 함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u>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u>)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를 말한다.</p> <p>2. ~ 6. (생략)</p> <p>제3조(제설·제빙 책임 순위) 제설·제빙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관리자의 <u>순위</u>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간에 합의가 된 경우에는 그 순위에 따른다.</p> <p>1. ~ 2. (생략)</p>	<p>제2조(정의) ① (제정안과 같음)</p> <p>1. ----- ----- ----- ----- -----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 ----- -----.</p> <p>2. ~ 6. (제정안과 같음)</p> <p>제3조(제설·제빙 책임 순위) ----- ----- ----- <u>책임 순위</u> ----- ----- ----- ----- -----.</p> <p>1. ~ 2. (제정안과 같음)</p>

# 서울특별시 강남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321
----------	-----

제출년월일 : 2020. 10. 5.  
제출자 : 강남구청장  
제출부서 : 도로관리과

## 1. 제안이유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범위, 방법, 시기, 등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주민과 함께하는 제설문화 정착을 유도하고 겨울철 강설로 인한 주민불편사항을 최소화 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목적, 정의 등(안 제1조 ~ 제2조)
- 나. 제설·제빙의 책임 순위, 범위 등(안 제3조 ~ 제4조)
- 다. 제설·제빙의 시기, 방법 등(안 제5조 ~ 제6조)
- 라. 제설·제빙 작업의 안전·도구 등의 관리(안 제7조 ~ 제9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1)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책임)
- (2)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8(지붕 제설·제빙 대상 시설물의 범위)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20. 9. 4. ~ 2020. 9. 24.): 의견제출 없음
-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3)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 (4)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선사항 없음

## 서울특별시 강남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도”라 함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를 말한다.
2. “이면도로”라 함은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도로법」에 의한 고속국도·일반국도·특별시도 및 지방도는 제외한다)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
3. “보행자전용도로”라 함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4. “주거용 건축물”이라 함은 순수 주거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5. “비주거용 건축물”이라 함은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을 말한다.

6. “제설·제빙”이라 함은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시설물 지붕의 적설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미연에 방지하여 인명보호 및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작업을 말한다.

②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2조의8 제1호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구조로 된 시설물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업화박관강구조(PEB구조) 시설물 : 힘이 많이 걸리는 부분에는 구조 부재를 크게 하고 힘이 적게 걸리는 부분에는 부재를 적게 하여 구조 부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구조로서 사전에 구조계산을 통하여 공장 생산되는 구조의 시설물
2. 아치판넬 시공 시설물 : 지붕의 구조적 역할을 하는 부분과 단열재, 내·외부 마감재가 일체로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으로서 공장 제작 후 현장에서 조립만으로 시공되는 시설물

**제3조(제설·제빙 책임 순위)** 제설·제빙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관리자의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간에 합의가 된 경우에는 그 순위에 따른다.

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점유자), 관리자의 순으로 한다.
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 또는 관리자, 소유자의 순으로 한다.

제4조(제설·제빙 범위) 건축물관리자가 제설·제빙을 하여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도 : 해당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

가.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 해당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나.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 해당 건축물 전체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3.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2조의8에서 정하는 시설물의 지붕(이하 ‘시설물의 지붕’이라 한다)

가. 최상층의 지붕면의 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

나. 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구간

제5조(제설·제빙 시기) ① 건축물관리자는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주간은 4시간 이내, 야간은 다음 날 오전 11시까지 제설·제빙을 마쳐야 한다. 다만,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로 한다.

② 건축물관리자는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이 25센티미터에 이르고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추가적인 강설이 예상될 경우, 즉시 건축물 지붕면의 제설·제빙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제설·제빙 방법)** ①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삽·빗자루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제설·제빙을 한 후 다음 각 호의 장소로 옮겨야 한다.

1. 보도의 눈이나 얼음 :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눈이나 얼음 : 도로의 중앙부분이나 공터 등
3. 시설물의 지붕에서 발생한 눈 : 시설물의 대지 내(다만, 대지 내에 여유 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

② 건축물관리자는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한다.

**제7조(제설·제빙 작업의 안전유의)** 건축물관리자는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설·장비·장구 등을 갖추어 제설·제빙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제설·제빙 작업의 중지)** 건축물관리자는 일몰·폭풍·이상한파 등으로 제설·제빙 작업자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제설·제빙을 중단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제설·제빙 도구 등의 관리)** ①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에 필요한 도구를 해당 건축물 내에 비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건축물관리자에게 제설·제빙에 필요한 자재나 도구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4조제3항

3. 미첨부 사유

본 조례는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로, 주요 제정 내용이 제설·제빙의 책임순위, 시기, 방법 등으로 구성되어 의안의 시행에 예산이 수반되지 않음.

4. 작성자

도로관리과 시설6급 위창현(02-3423-6562)

< 의안 소관 부서명 >

안전교통국 도로관리과	
연 락 처	(02) 3423 - 6562